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8월 28일
-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주택법에서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
- 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,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 (안 제2조)
-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함 (안 제3조 내지 제11조)
  - 구 성 : 15인 이내 (위원장 도지사)
  - 주요기능 : 주택종합계획 수립·변경 및 주요 주택정책에 관한사항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안 제2조 중 연도별 주택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, 안 제8조 제2항 중 “회의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”라는 규정은 회의준비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통지 기일을 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- 안 제4장 보칙 제13조(과태료 징수)의 조항은 본문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은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